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8832
------	-------

제안연월일 : 2026. 5.

제안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377	모경중의원	2025. 9. 30.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6.02.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 회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478	위성근의원	2025. 12. 22.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6.02.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 회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80	염태영의원	2026. 2. 5.	소위원회 직접회부(2026.04.29.)

제434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경제재정소위(2026.04.29.)에서 위 3건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34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30.)

에서 경제재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3건의 법률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등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야 시설의 법적 지위나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을 인지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민간투자시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특히 시설의 귀속 시점이나 사용·수익 기간은 계약의 핵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 및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등 계약의 핵심 사항에 대해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 의무를 명문화하고,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고지 및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행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투자시설의 임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 및 제65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임차하려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제1항 또는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 등으로 고지한 내용이 달라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3.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기반시설 사용·수익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설>

<신설>

2. ~ 5. (생략)

② (생략)

제65조(과태료)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3.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 7.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